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고단10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협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0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협박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C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3. 00:32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랑만난지 좀 돼서 그런가, 우리 또 만나서 할까?", "너랑 한 거 영상 있는데?", "보여주면 삭제할게 영상", "뒷치기 할 때 찍어서 너가 못 본 거다", "폰섹 한번하고 끝내자", "카메라 켜", "구멍 보여줘 봐",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1분 동안 안까면 번호랑 전부 올린다", "지금 보여주고 끝내자", "장난 하는 거로 보여? 보여주지 마 크키 번호랑 해서 올려줄게", "거짓말인 줄 아나?", "마지막 기회 줬다, 너 D하지?", "너 번호 치면 너 나오거든? 너 친구들한테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로 보여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C 대화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